(재)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-129호

## 2023 인천 초기단계 콘텐츠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

(재)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초기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성장지원을 통해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> 2023년 3월 24일 (재)인처테크노파크워장

1 사업개요

□ 사 업 명 : 2023 인천 초기단계 콘텐츠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

□ 사업목적

O 인천 초기 콘텐츠기업이 국내외 시장진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 및 활동을 지원하여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마케팅 능력 제고

### □ 사업내용

- O 지원기간 : 협약일(2023. 5. 예정) ~ 2023. 11. (약 7개월)
-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<u>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연매출액 1.5억원</u>

미만인 인천 소재(본사) 콘텐츠 기업

- 지원대상 : 아래 조건 중 1개라도 충족하는 인천 소재(본사 소재지 기준) 콘텐츠 기업
- ① 공고일 기준 창업일(사업등록증 상 설립일자)로부터 3년 이내

(단,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일자를 창업일로 봄)

②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.5억원 미만 콘텐츠기업

(2022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, 결산년도 미도래 시 2021년 재무제표 기준)

- 가점대상 :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(퇴거(예정)기업 제외)
- 콘텐츠기업 :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(정의)에 해당하는 산업 중 "만화(웹툰), 애니메이션, 캐릭터, 방송영상, 게임, 음악, 콘텐츠솔루션, 지식정보, 뉴콘텐츠 등"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(단, 순수예술, 영화, 광고, 출판, 산업디자인 제외)

O 지원규모: 17개사 내외, 기업당 최대 12백만원

○ 지원내용 : 기업 성장을 위한 권리화, 마케팅 등 자금의 패키지 지원

구분	지원항목	세부 지원내용	지원금한도
STEP 1	지식재산권	-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	3백만원
권리화	인증	-인증미크 획득비용 지원(혁신형기업인증, 벤처인증, 기술인증 등)	3백만원
STEP 2 마케팅	디자인개발	-BI·CI 등 기업/콘텐츠 이미지 구축	6백만원
	홍보영상	-기업 및 콘텐츠 영상물 제작, 방송용 영상물 제작 및 송출	7백만원
	홈페이지/앱	-홈페이지 및 앱(UI/UX) 제작 및 리뉴얼	8백만원
	홍보판촉물	-카탈로그, 리플릿 등 인쇄물 제작	5백만원
	홍보마케팅	-신문, 잡지, 라디오, TV, 유튜브 등 매체 이용광고 -키워드광고, 배너광고, 소셜마케팅, 중개플랫폼	10백만원

- 지원규모(최대 12백만원) 내에서 필요한 지원항목 1~3개 항목 선택
-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한도내 최종지원금액 결정
- 선정통보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
- 사업비는 내부 집행을 허용하지 않으며, 외부 수행사를 통한 집행만 인정함
- 각 지원항목의 수행사는 기업에서 자유롭게 선정(단, 해당 항목 관련 업종 업체에 한함)

# □ **지원 제외대상** ※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,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

- O 공고일 기준 본사가 인천광역시 내 소재가 아닌 기업
- 지원대상(창업 3년 이내 또는 연매출액 1.5억원 미만)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
- O 사업자(주관기관)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
- 사업자(주관기관)가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료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 보험, 산재보험)의 체납한 경우
- 사업자(주관기관)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
- 사업자(주관기관)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(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)을 체납한 경우
- 신청일 현재 사업 참여인력, 대표권자,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
- 사업자(주관기관)가 동일한 콘텐츠(사업화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로 인천 테크노파크 및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

# 2

# 세부 지원내용

## □ 지원비율

- O 지원금 : 기업당 최대 12백만원(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)
  - 총 사업비의 90% 이내 지원(10%이상 기업 현금자부담)

구분	지원금	+	기업부담금	=	총 사업비
예시	총 사업비의 90% 이하	+	총 사업비의 10% 이상	=	100% (지원금+기업부담금)
에 <b>시</b>	1,000만원	+	112만원	=	1,112만원

- 총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산정하며,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(VAT)는 기업이 별도 부담
- 사업규모 및 내용에 맞지 않은 과도한 예산 책정은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
- 부가세는 지원금 집행 불가하며, 회계정산 결과 불인정 금액은 환수 조치함
- 사업비는 기업의 사업추진 내용과 적합하도록 신청하여야 하며,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신청금액의 적정성,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

## □ 지원조건

O 의무이행활동

구분	세부내용	비고
	■ 2023년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필수이수 ※ 명확한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참여인력 중 이체담당자 및 집행담당자를 포함 2인 이상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을 수료해야 함	2인 이상
교육수료	■ 2023년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이수 ※ ('21.1.6.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) 보조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성희롱·성폭령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의무 부과 ※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 : 직장내 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,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교육,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	참여인력 전원
프로그램 참여	■ 콘텐츠기업 멤버십 프로그램 참여	1회 이상
성과관리	■ 지원사업 결과물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 ※ 사업수행 관련 자료, 사후 결과조사(지원기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), 정보공시 등	요청시

## □ 추진절차 및 일정

모집공고 및 신청접수

●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3. 4. 21.(금) 17:00까지

• 접수방법 : 비즈오케이(Biz-OK)를 통한 온라인 접수 (선정기업  $\rightarrow$  ITP)

尣

선정통보

● 선정평가(서면평가): 2023, 5, 2,(화) 예정

• 선정통보 :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업 개별통보(ITP → 선정기업)

Û

협약체결

● 선정에 따른 수행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(ITP ↔ 선정기업)

사업수행 : 2023. 5. ~ 2023. 11.(예정)

①

1차 지원금(50%)

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(선정기업→ ITP) **※ 1차 지원금 지급전까지** 

● 1차 지원금(50%) 지급 : 2023. 6.(예정)

※ 1차 지원금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기업이 자체자금으로 선집행하고 증빙자료 제출, 검토 후 지원금 지급

Û

중간점검

● 중간점검(서면점검 및 기업방문): 2023. 8. ~ 9.(예정)

• 진척도(50% 기준) 평가결과 '계속' 2차 지원금 지급, '지원중단'환수

尣

2차 지원금(50%)

• 2차 지원금(50%)지급 : 2023. 9.(예정) (ITP → 선정기업)

Û

결과보고

● 결과보고서 제출 : 2023. 11. 17.(금)(선정기업 → ITP)

Û

사업비 정산/반납

• 사업비 정산/반납(회계법인)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# 3 접수기간 및 방법

### □ 접수기간

O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3. 4. 21.(금) 17:00까지

○ 접수방법 : 비즈오케이(Biz-OK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※ http://bizok.incheon.go.kr 홈페이지 내 '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'에서 신청

※ hwp형식의 문서만 가능하며, pdf, pptx 등 타 형식의 문서는 접수 불가

### O 제출서류 <u>※ 서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확인 필수</u>

구분	세부구분	서류 및 요건	
	신청서 (붙임문서)	신청서(서식1), 추진계획서(서식2), 동의서(서식3), 체크리스트(서 식4),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(서식 5), 추첨표(서식 6)	
	사업자등록증	사업자등록증 / 법인등기부등록증(법인사업자만 해당) *공고일 이후 발급분	
필수	재무제표	최근 결산년도 기준 재무제표 (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) *설립 1년 미만의 경우 사유서(자유양식)로 대체 가능	
	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	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 *증명서 유효기간(접수마감일 기준 유효분) 확인필수	
	4대보험 완납증명서	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(건강, 연금, 고용, 산재) *공고일 이후 발급분	
	유망중소기업	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	
	여성기업	여성기업인확인서(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발급)	
해당시	장애인기업	장애인기업확인서(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)	
제출	벤처기업	벤처기업확인서	
	법인전환기업	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등록증(창업일자 확인용도)	
	1인 기업 확인서	1인 기업 확인서(서식 7, 4대보험 완납증명 미제출 사유서 용도)	

※ 제출서식별 개별 파일로 정리 후, '[별첨]제출서류폴더'에 하나의 폴더로 압축하여 업로드

※ 파일명 : 2023 초기단계콘텐츠사업화패키지지원\_기업명

# 선정방법 및 기준

## □ 선정방법

○ 평가방법 :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적합성검토 및 서면평가 실시

○ 평가절차 : 적합성검토(인천TP) → 서면평가(외부 전문가 5인) 순으로 진행

- O 평가위원: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5명
  - 평가위원 예비명부(3배수) 추첨순위에 따라 섭외 및 구성
- O 선정기준 :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에게 예산범위 내 차등지원
  -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'적격'으로 간주하며, 적격 해당 시 고득점 순으로 선정
    - ※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
  - ※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
  - ※ 지원조건에 부합(70점 이상)하여도 고득점 기업이 많을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음
  -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방법
  - ① 최고·최저점을 포함하여 평가점수 총점이 높은 기업
  - ② 고배점 평가항목의 총점이 높은 기업
  -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기업이 제안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감액 조정을 진행함
- 선정통보 :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업에 개별통보

### □ 적합성검토

- 검토방법 : 제출서류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 검토
- 검토원칙(KOCCA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 제12조제2항)
  -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
  - 마감이후 기업의 요청으로 신청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 불가
  - ※ 단, 적격기업이 현저히 적을 경우, 추가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추진할 수 있음
- O 제외기준
  -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(미제출)한 서류가 있는 경우
  - 날인(서명) 필요 서류에 날인(서명) 없이 제출했을 경우
  - ※ 서류 내 기재된 내용의 공신력 및 효력이 없으므로 미제출로 간주
  -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할 경우
  -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 - 참가기준 자격검증 서류의 내용 상 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# □ 서면평가

○ 평가항목

평가항목		세부평가항목		
사업 사업 이해도 기획력		● 목표시장 및 추진계획 등 내용의 지원사업 목적 부합 여부		
(30)	기획 완성도	•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목표의 구체성, 현실성 확보여부	15	
'ᆼ│ 제계 구축 │		•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	15	
기관 <sup>(25)</sup> 기관 전문성		• 기업의 전문성, 경쟁력, 기술력 보유 여부(수행경험 포함)	10	
사업 사업비 규모		• 추진계획과 지원금 규모의 적정성	10	
(20)	지원금 편성	• 국고지원금 편성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	10	
기대 경제적 성과		● 사업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매출규모	15	
효과 (25)	후속발전 가능성	• 연계 콘텐츠 창출, OSMU 등 발전 가능성	10	
가점	입주기업	●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여부	2	
사항 (4)	기업특성	• 유망 중소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벤처기업 ※ 4개 기업특성 중 1개라도 해당시 2점부여 ※ 중복해당시 최대배점인 2점부여	2	
합 계 (				

# □ 지원금 조정심의

- O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되, 평가표 내 사업예산 항목 점수를 토 대로 최종 지원금을 조정함
- O 지원예산 적정성 평가기준

평가항목		세부평가항목	배점
사업	사업비 규모	● 추진계획과 지원금 규모의 적정성	10
예산	지원금 편성	• 국고지원금 편성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	10

#### O 적정성 등급 및 감액규모

구분	A등급	B등급	C등급
평균점수	17점 이상	15점 이상 17점 미만	12점 이상 15점 미만
감액규모	감액 없음	신청금액의 15% 감액	신청금액의 30% 감액

# 5 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

## □ 문의처

구분	담당	연락처
사업문의	(재)인천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지원센터 사업담당	(유선) 032-876-5072 (메일) renelly@itp.or.kr

**※** 문의시간 : 평일 09:00 ~ 18:00(점심시간 12:00 ~ 13:00 및 공휴일 제외)

## □ 기타 유의사항

#### ○ 일반사항

- 본 사업은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, 선정기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- 본 사업의 신청, 사업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, 안내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
-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#### ○ 사업신청

- 사업신청 시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,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
-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<u>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, 어떠한 사유</u> <u>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함</u>에 따라 사업담당자에게 접수 청탁연락 금지
-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
-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

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#### ○ 사업의 선정 및 취소

- 공정한 기준을 통해 평가를 이행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따라, 주관적 인 판단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의심하는 항의행위 금지
-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이후 전담기관(ITP)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서류 미제출,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(선정 취소)될 수 있음
- 선정기업의 사유로 사업 포기,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사업선정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지원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
- 본 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수행기관의 서류 허위제출 등의 사항에 따른 제재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(ITP)은 사업즉시 중단, 지원금 환수, 사업 참여제한,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동일한 내용으로 전담기관(ITP)이나 타 지원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,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#### ○ 사업추진

- 본 사업은 '본사가 인천 소재인 콘텐츠기업' 대상 사업이므로 사업 선정 후 지원기간 중 본사를 인천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전액 환 수 조치함
-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선정기업이 부담함
-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예산(지원금 및 기업부담금)을 별도의 계정(계좌) 으로 구분·관리하여야 하며,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-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별 정산보고서 제출 후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증을 실시해야 하며, 회계검증 및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및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명확한 보조금 집행·관리를 위하여 <u>중간점검 실시 전까지</u>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
- ※ 수료일자의 경우 선정통보일 ~ 중간점검일 내여야 함
- 선정기업은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대책(2018.03.)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중간점검 전까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
- ※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, 사업장

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됨

- ※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대책(2018.03.) :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화
- 선정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협약기간 종료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
-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타당한 사유 없이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#### ○ 성과관리

- 본 사업의 결과물은 전담기관(ITP)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원성과물로 활용·전시될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향후 3년 간 사후 결과조사(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)에 성실히 임해야 함